##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42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조정훈·김소희·김대식

인요한 • 최수진 • 서지영

김용태 · 정성국 · 조경태

이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 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 2월 28일까지"를 "203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	제2조(유효기간)		
정규정은 <u>2025년 2월 28일까지</u>	<u>2031년 2월 28일까지</u> -		
효력을 가진다.			